|  |  |  |
| --- | --- | --- |
|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2호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가 2019년 10월 8일 국무원 제6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9년 10월 22일  **제1장 총칙**   1. 비지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방출하고 발전시키며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2. 이 조례에서 비지니스 환경이라 함은 기업 등 시장주체의 시장경제 활동과 연관된 제도적•시스템적 요인과 조건을 지칭한다. 3. 국가는 간정방권(簡政放權), 방관결합(放管結合),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자원 배분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활동 개입을 최소화하며 사중(事中)•(事後) 감독관리를 강화•규범화하고 행정 능력 및 수준을 강화하며 제도성 거래 원가를 확실히 낮추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이끌어 내며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행정의 공개성•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를 일반화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하며 의사결정•집행•관리•서비스•결과의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1.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은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 시장주체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정부 직능 전환을 핵심으로 체제•매커니즘을 혁신하고 협동•연동을 강화하며 법치 보장을 완비함으로써 각 유형의 시장주체를 위하여 안정적•공평적•투명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제 선진 수준의 양호한 투자•흥업(興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질서가 건전한 현대 시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법에 의거하여 각 유형 생산요소의 자유 유동을 촉진시키며 각 유형의 시장주체가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권장•지원•유도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 및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며 내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 등 각 유형의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1. 각급 인민정부는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에 대한 조직 및 지도를 강화하고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조치를 보완하며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의 통일적 계획•추진 및 실행 독촉 관련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을 적시에 조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 주관부서를 확정할 수 있다.  국가는 각 지역 및 각 부서가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법치의 틀 안에서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창조적•차별적인 구체적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또는 편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1. 국가는 시장주체와 사회대중의 만족도를 지향하는 비지니스 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에 대한 비지니스 환경 평가의 견인 역할과 독촉 역할을 발휘한다.   비지니스 환경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각 지역과 각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초래하거나 시장주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아니된다.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비지니스 환경 평가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장주체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 및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공평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안전, 품질, 근로자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법정(法定)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 경제무역 활동 중에 국제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2장 시장주체 보호**   1. 국가는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고수하며 각 소유제 유형의 경제가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경영 자율권을 누린다.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가 응당히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가는 각 유형의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자금, 기술, 인력자원, 토지사용권 및 기타 자연자원 등 제반 생산요소와 공공서비스 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유형의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성장 지원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받는다.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자금 배정,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직책 평정, 인력자원 정책 등 방면에서 법에 의거하여 각 유형의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적인 정책•조치를 제정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입찰•투찰 및 정부조달은 공개적•투명적이고 공평•공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 의거하여 각 소유제 유형 및 각 지역의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불합리적인 조건 또는 제품 생산지 등으로 제한을 두거나 배제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유관부서는 입찰•투찰 및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위법행위•범칙행위를 바로잡고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경영인의 신변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한다.   법에 정해진 권한•조건•절차에 반하여 시장주체의 재산과 기업경영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査封), 동결 및 압수(扣押) 등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법에 의거하여 상기 행정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법률•법규의 규정을 벗어나 시장주체에게 재원, 물자 또는 인력의 제공을 요구하는 할당 행위를 금지한다. 시장주체는 여하한 형식의 할당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1.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지적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매커니즘 및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구조 매커니즘을 완비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는 상표등록•특허출원 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표등록•특허출원 신청에 대한 심사 업무의 효율을 개선한다.   1. 국가는 중소액 투자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액 투자자 권익 보호 매커니즘을 보완하며 중소액 투자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중소액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의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2.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주체는 산업협회•상회 등 사회조직의 가입 또는 탈퇴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시장주체에게 우열 평가(評比), 기준도달 평가(達標), 표창, 교육훈련, 심사(考核), 시험(考試) 및 유사한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안니되며 상기 행사를 빌미로 시장주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주체 권리구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주체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간편신속한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장 시장 환경**   1. 국가는 상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기업등기 업무 규범을 통합하고 데이터 기준 및 플랫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합하며 통일사회신용코드를 도입하여 등기관리를 진행한다.   국가는 ‘증조분리(證照分離,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의 분리)’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경영허가 사항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하며 법에 의거하여 심사비준 철폐, 심사비준의 비안(備案) 전환, 고지승낙제 시행,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등 방식으로 모든 기업경영허가 사항을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영업집조 취득 후 관련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데 편리를 제공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 기업경영허가 사항을 기업등기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유관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설립 신청 단계부터 일반적 경영조건을 확보하기 까지의 필요한 수속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국가가 규정한 기업 설립•개업 수속 처리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처리기간을 확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의 주소 등 관련 변경등기 신청에 대하여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한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법규•규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보유 중인 유효한 허가증은 기업이전 후 중복적으로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국가는 지속적으로 시장접근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각 유형의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별도로 시장접근 규제 성격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부의 유관부서는 반독점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집행을 강화하여 시장경제 활동 중의 독점 행위, 부정당경쟁 행위 및 행정권력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함으로써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 질서가 건전한 인력자원 시장 체계를 구축•완비하고 도시•농촌, 지역, 업계의 불균형과 신분•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타파함으로써 인력자원의 질서적•사회적 유동과 합리적 배분을 촉진시킨다. 3.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주체가 혁신공간을 확장하고 제품, 기술, 비지니스 모델, 관리 등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에 있어서의 시장주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4.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의 제반 감세강비(減稅降費) 정책을 엄격히 실행하고 정책 실행 중에 봉착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시장주체가 전면적•적시적으로 감세강비(減稅降費)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정부성 기금을 설립하거나 기업 관련 행정사업 요금, 기업 관련 보증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상 근거가 있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부성 기금, 기업 관련 행정사업 요금, 기업 관련 보증금 및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는 운영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목록•리스트 관리를 시행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상기 요금•보증금은 목록•리스트에 수록된 것을 제외하고 일절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기관의 보증서로 기업 관련 보증금의 현금 납부를 대체하는 것을 보급한다. 6. 국가는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중소기업의 융자 원가를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금융감독관리부서는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 감독관리•평가•장려 매커니즘을 보완하여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대출 및 신용대출 지원을 합리적으로 증가하며 대출 심사비준 업무 효율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민간기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 수취 행위를 규율하여야 하며 규정에 반하여 서비스 대상으로부터 불합리적인 수수료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업은행은 기업계좌 개설 서비스 기준, 수수료 기준 및 소요기간 등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다차원적 자본시장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장주체의 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민간기업•중소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주식•사채 및 기타 융자 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직접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2. 수도•전기•가스•열 등을 공급하는 공익사업 시행업체는 서비스 기준, 요금 기준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시장주체를 위하여 안전•간편•신속하고 안정적이며 가격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합리적 조건 수락을 시장주체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여하한 명목으로 불합리적인 요금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지역은 설치 절차를 최적화하고 국가가 규정한 설치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설치 소요기간을 확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의 유관부서는 공익사업 시행업체의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1. 산업협회•상회는 법률•법규와 규장에 따라 업계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를 적시에 전달하며 시장주체를 위하여 정보자문, 홍보•교육훈련, 시장 개척,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산업협회•상회의 비용 수취 행위, 우열 평가(評比), 인증 등 행위를 엄격히 규율한다.   1. 국가는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행정 신용, 비지니스 신용, 사회 신용 및 사법 공신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사회의 신용 의식 및 신용 수준을 제고하며 신용정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상업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한다. 2.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에게 한 정책약속과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각 유형의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구획 조정, 행정부 교체, 기구•직능 조정 및 관련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약정을 위반하거나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정책약속•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시장주체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사업기관은 계약을 어기고 시장주체에 대한 화물대금, 공사대금, 서비스 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기업은 우위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기관•사업기관의 시장주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 정리•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며 예산관리 강화, 엄격한 책임 추궁 등 조치를 통하여 국가기관•사업기관의 시장주체에 대한 지급채무 이행 지체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장기적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유관부서는 시장주체 등록말소 절차를 최적화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등록말소 비용을 낮춰야 한다. 설립 후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채무가 없는 시장주체의 등록말소 수속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시장주체의 등록말소 수속은 법에 따라 채권•채무가 해결된 후 적시에 처리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기업파산 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파산 과정과 연관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 서비스**   1.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서비스 의식을 진일보 강화하고 정부의 업무 태도를 확실히 전환함으로써 시장주체를 위하여 규범적이고 효율적이며 원활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여 절차 축소, 서류 간소화, 기간 단축의 요구에 따라 정부 서비스 사항(행정권력 사항 및 공공서비스 사항 포함, 아래에서도 이와 동일) 표준화 업무 절차 및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정부 서비스 기준을 세분화•계량화하며 자유재량권을 축소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무차별적 접수, 동일 기준에 따른 처리를 추진한다. 법률•법규•규장의 근거 없이 정부 서비스 사항의 전제조건과 절차를 증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서비스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실제사황에 근거하여 즉석 처리 완료, 일회에 한하여 처리 완료, 소정의 기간 내에 처리 완료 등 제도를 시행하고 집중적 처리, 근방 처리, 온라인 처리, 격지 처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시장주체의 관련 자료•수속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일회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현장답사, 현장확인조사, 기술심사, 청문•논증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진행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률•법규•규장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정부 서비스 사항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조속히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합리성•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기간을 확정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국가가 규정한 정부 서비스 사항 처리기간 내에서 시간을 진일보 단축할 수 있으며 그리하는 경우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초과 시 담당기관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정부서비스장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 해당 행정구역 내 각 유형의 정부 서비스 사항은 일반적으로 정부서비스장에서 통일적으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서비스장에 부서별로 설치된 서비스 창구는 여건을 마련하여 종합창구로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국가는 전국 통합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이하 ‘통합 온라인 플랫폼’으로 약칭)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국 범위 내에서 정부 서비스 사항의 ‘일망통판(一網通辦,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업무 처리)’을 실현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가기밀 연관 등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서비스 사항은 국무원이 확정한 절차에 따라 통합 온라인 플랫폼에 포함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에 의탁하여 정부 서비스 정보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며 정부 서비스의 다지역•다부서•다차원적 데이터 공유와 업무 협동을 촉진한다.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정부 서비스 데이터를 통합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공유 데이테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유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자 영업집조•경영허가증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 영업집조•경영허가증의 다지역•다부서 공유와 전국 범위 내에서의 상호신뢰 및 상호인정을 실현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전자 영업집조•경영허가증의 보급 및 응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정부서비스장 및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전면적 연결•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주체는 정부 서비스 처리 채널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처리 채널을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웹사이트,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시장주체와 연관된 법률•법규•규장•행정규범성문건 및 각 유형의 정책•조치를 집중적으로 공포하여야 하며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하여 홍보와 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행정허가의 신규 설정을 엄격히 통제한다. 행정허가의 신규 설정은 행정허가법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합법성•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심사와 논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관리 또는 시장 매커니즘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거나 행정허가법 및 국무원의 규정상 행정허가 설정이 금지된 사항은 일절 행정허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안(備案), 등기, 등록, 목록, 규획, 연간 정기검사, 연간 보고서, 감제(監制), 인정, 인증, 심사결정 및 기타 여하한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변칙적으로 설정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에 이미 해당 관리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허가의 관리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은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 관리사항에 대한 법률•행정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지방은 법에 의거하여 해당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1. 국가는 행정허가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행정허가 리스트는 적시에 조정하여 사회에 공포하며 리스트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행정허가를 대폭 간소화한다. 행정기관은 이미 철폐된 행정허가를 계속 실시하거나 변칙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협회•상회 또는 기타 조직으로 이관하여 실시하여서도 아니된다.  행정허가 관리를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통합 실시, 심사비준 권한의 하부 이양 등 방식으로 심사비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심사비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승낙의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투자 심사비준 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프로젝트 성격, 투자규모 등에 따라 유형별로 투자 심사비준 절차를 규범화하고 심사비준 요건을 간소화하며 기술심사 사항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결정, 토지 사용, 규획 등 건설 조건을 실행함에 있어 협동을 강화하고 관련 심사비준 수속의 온라인 연합처리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 건설 프로젝트(특수 공정 및 교통•수리•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 공정 제외)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고 연합심사비준, 시공도 연합심사, 연합준공검수 등 방식을 도입하며 심사비준 수속을 간소화하고 심사비준 효율을 개선한다.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개발구•신구(新區) 및 조건이 구비된 기타 구역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평가제를 도입하여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해당 구역 내의 미개발 중요 광물자원, 지질재해 위험성 등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일적으로 실시하며 구역 내 시장주체에 대하여 단독적인 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구역평가 비용을 시장주체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정심사비준 수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중개 서비스 사항(이하 ‘법정(法定)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은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근거가 없을 경우 행정심사비준 수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서비스기구는 법정(法定)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의 처리조건,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는 중개서비스기구와 행정기관의 연결 관계 정리를 가속화 추진한다. 행정기관은 시장주체에게 중개서비스기구를 지정하거나 변칙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정(法定)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시장주체에게 중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 산하의 사업기관•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조직 및 그가 운영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중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심사비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중개서비스기구에 기술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경쟁 방식으로 중개서비스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용역대금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주체의 부담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증명 사항은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을 근거로 설정되어야 한다.   증명 사항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성의 원칙과 엄격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법정(法定) 영업집조•경영허가증, 법정(法定) 문서, 고지승낙서, 정부부서 내부 검증 및 부서간 검증, 온라인 검증, 계약 증빙 등을 통한 처리가 가능하거나 기타 서류에 포함되었거나 기타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발행기관에 대한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 사항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유관부서는 증명 사항 리스트를 공개하여 설정근거, 제출요구기관, 발행기관, 처리지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리스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부서, 공익사업 시행업체 및 서비스기구는 증명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지역 간, 각 부서 간의 증명 상호인정•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의 다국적 무역 원활화에 관한 요구에 따라 수출입 단계의 심사비준 사항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감독관리 요구를 철폐하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개선하며 통관항 수수료를 규범화하고 통관 비용을 절감하며 통관항 및 국제무역 분야 관련 업무의 국제무역 ‘단일 창구’를 통한 처리를 추진한다. 2. 세무기관은 세무신고 자료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 횟수를 줄이며 세무신고 처리 소요기간을 공개하고 세무신고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전자영수증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세무신고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납세 서비스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기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여 부동산 등기•거래 및 납세 수속의 단일 창구 접수, 병행 처리를 시행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며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국가가 규정한 부동산 등기 처리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처리기간을 확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적인 동산및권리담보등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시장주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산및권리담보등기 수속을 이행하는 처리방식을 실현한다. 통합적 등기 공시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동산 및 권리 범위는 별도로 규정한다.   1.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밀접하고 청결한 신형 정부-기업 관계 구축에 관한 요구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간 의사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주체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시적으로 수렴하고 시장주체가 생산경영 중에 봉착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법에 의거하여 해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기업 간 의사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함에 있어 시장주체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목적성•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거나 시장주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아니된다.   1.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편리하고 원활한 채널을 구축하여 비지니스 환경 관련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언론매체는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조치와 효과를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비니지스 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비지니스 환경에 대한 여론의 감독을 권장한다. 단,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시키는 보도는 금지한다.  **제5장 법 집행에 대한 감독관리**   1. 정부의 유관부서는 법률•법규와 직책에 엄격히 따라 감독관리 책임을 확정하고 감독관리 대상 및 범위을 명확히 하며 감독관리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고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빈틈 없는 감독관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공개적이고 투명적인 감독관리 규칙 및 기준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간단명료하고 용이한 감독관리 규칙 및 기준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의 신용 기반 신형 감독관리 매커니즘 구축 가속화 요구에 따라 신용 감독관리를 혁신하고 보완하며 신용 감독관리에 대한 지원 및 보장을 강화하고 신용 감독관리의 조직 및 실시를 강화함으로써 신용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4. 국가는 ‘2무작위•1공개(雙隨機•一公開)’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공공안전 및 인민대중의 생명건강 등과 연관된 특수 업종과 중점 분야를 제외하고 시장 감독관리 영역의 행정검사는 무작위로 검사대상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검사요원을 선정하며 검사사항 및 처리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동일 검사대상에 대한 복수의 검사사항은 가급적 합병하거나 다부서 연합추출검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공안전 및 인민대중의 생명건강 등과 연관된 특수 업종과 중점 분야는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빈틈 없이 중점 감독관리를 시행하고 중점 감독관리의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신고•제보, 전달•지시, 데이터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문제점의 결에 초점을 맞춰 검사를 실시하고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혁신 권장의 원칙에 따라 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 등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신중하게 감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성격•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상응하는 감독관리 규칙 및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성장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금지하거나 감독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단화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가 통일적으로 구축한 감독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감독관리 정보 수집•공유•취합을 강화하고 원격 감독관리, 이동식 감독관리, 조기경보•예방통제의 특징이 있는 비현장 감독관리를 추진하며 감독관리의 정밀화•지능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다부서•다지역 행정법 집행 연동호응 및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법 위반 단서 상호연결, 감독관리 기준 상호통합, 처리결과 상호인정을 실현한다.   국가는 행정법 집행 직능 및 법 집행 자원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배분한다. 관련 분야에서 통합적 행정법 집행을 시행하고 법 집행 역량을 간소화하며 법 집행 주체와 등급을 축소하고 기층(基層)의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한다.   1. 법집행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법 집행 공시, 행정법 집행 전 과정 기록 및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에 대한 법제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행정법 집행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시, 행정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기록 및 추적가능한 관리,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에 대한 빈틈 없는 법제심사를 실현하여야 한다. 2. 행정법 집행 중에 설득•교육, 권유•시범, 행정지도 등 비강제적 수단의 응용을 보급하고 법에 의거하여 신중하게 행정강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강제적 수단으로 행정관리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행정강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위반 경위가 경미하거나 사회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행정강제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강제 실시가 확실히 필요한 경우 시장주체의 정상적 생산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을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리정돈, 특별단속 등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연관되었거나 중대•특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국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의 비준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구역에서 관련 업종•분야의 시장주체에게 보편적인 조업중단•휴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징금•몰수금 수입을 행정법집행기관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1. 국가는 행정법 집행의 자유재량권 기준 제도를 완비하여 재량의 범위, 유형 및 폭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행정법 집행의 자유재량권 행사를 규율한다.   **제6조 법치 보장**   1. 국가는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수요에 근거하여 법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규장•행정규범성문건을 적시에 개정하고 폐지한다.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개혁 조치가 현행 법률•행정법규 등 관련 규정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의 수권을 받은 후 선행(先行)적으로 시범 시행할 수 있다.   1.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법규•규장•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산업협회•상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법규•규장•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신문•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건의 채택 상황 피드백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30일로 한다.   1.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법규•규장•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공평경쟁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주체의 권리•의무와 연관된 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성 법규가 행정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되거나 규장이 법률•행정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시장주체는 국무원에 서면으로 심사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명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범성문건은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약화하거나 그 의무를 확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접근 및 퇴출 조건을 설정하거나 시장주체의 정상적이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주체의 권리•의무와 연관된 행정규범성문건은 법에 정해진 요구와 절차에 따라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하지 아니한 행정규범성문건을 행정관리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1.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법규•규장•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실제와 결부시켜 시장주체를 위한 필요한 적응기간 및 조정기간 설정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규장•행정규범성문건 등의 출범 속도를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정책 효과를 전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겹쳐지거나 서로 충돌됨으로써 시장주체의 정상적 생산경영 활동에 소극적인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1. 국가는 조정, 중재, 행정재결, 행정재심사, 소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조율하는 다원화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보완함으로써 시장주체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간편신속한 분쟁 해결 경로를 제공한다. 2. 국가는 법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상식 보급 책임제를 실행하며 국가기관 공무원의 법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시킨다. 또한, 시장주체의 준법경영과 법에 의거한 권익 수호를 유도하고 사회의 전체적인 법치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법치화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3.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변호사, 공증, 사법감정, 조정, 중재 등 공공법률서비스 자원을 통합하여 공공법률서비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공공법률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정부와 그 유관부서 및 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5. 시장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경우 6. 정책•조치를 제정하거나 실시함에 있어 법에 따라 각 유형의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법에 정해진 권한, 조건, 절차에 반하여 시장주체의 재산과 기업경영인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査封), 동결 및 압수(扣押) 등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8. 법률•법규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시장주체에게 재원, 물자 또는 인력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9. 법률•법규상의 근거 없이 우열 평가(評比), 기준도달 평가(達標), 표창, 교육훈련, 심사(考核), 시험(考試) 및 유사한 행사에 참여할 것을 시장주체에게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또는 상기 행사를 빌미로 시장주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10. 정부성 기금, 기업 관련 행정사업 요금, 기업 관련 보증금을 불법으로 설정하거나 목록•리스트 외에서 집행하는 경우 11.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에게 한 정책약속과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각 유형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주체에 대한 화물대금, 공사대금, 서비스 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2. 행정허가를 변칙적으로 설정하거나 실시하는 경우; 이미 철폐된 행정허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거나 변칙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이미 철폐된 행정허가를 산업협회•상회 또는 기타 조직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 13. 시장주체에게 중개서비스기구를 지정하거나 변칙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불법으로 시장주체에게 중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 14. 시장주체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법규•규장•행정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산업협회•상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지니스 환경을 해치는 기타의 경우 16. 공익사업 시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유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17. 서비스 기준, 요금 기준, 처리기간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시장주체에게 불합리적인 서비스 조건의 수락을 강요하는 경우 19. 시장주체로부터 불합리적인 요금을 수취하는 경우 20. 산업협회•상회, 중개서비스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유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21. 불법으로 비용 수취, 우열 평가(評比), 인증 등 행위를 전개하는 경우 22. 시장주체의 산업협회•상회 등 사회조직 가입 또는 탈퇴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경우 23. 법률•법규상의 근거 없이 우열 평가(評比), 기준도달 평가(達標), 표창, 교육훈련, 심사(考核), 시험(考試) 및 유사한 행사에 참여할 것을 시장주체에게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또는 상기 행사를 빌미로 시장주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24. 법정(法定)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의 처리조건,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기준을 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불법으로 중개 서비스의 이용을 시장주체에게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제7장 부칙**   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优化营商环境条例**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2号  《优化营商环境条例》已经2019年10月8日国务院第66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1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9年10月2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持续优化营商环境，不断解放和发展社会生产力，加快建设现代化经济体系，推动高质量发展，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营商环境，是指企业等市场主体在市场经济活动中所涉及的体制机制性因素和条件。  **第三条**　国家持续深化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最大限度减少政府对市场资源的直接配置，最大限度减少政府对市场活动的直接干预，加强和规范事中事后监管，着力提升政务服务能力和水平，切实降低制度性交易成本，更大激发市场活力和社会创造力，增强发展动力。  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应当坚持政务公开透明，以公开为常态、不公开为例外，全面推进决策、执行、管理、服务、结果公开。  **第四条**　优化营商环境应当坚持市场化、法治化、国际化原则，以市场主体需求为导向，以深刻转变政府职能为核心，创新体制机制、强化协同联动、完善法治保障，对标国际先进水平，为各类市场主体投资兴业营造稳定、公平、透明、可预期的良好环境。  **第五条**　国家加快建立统一开放、竞争有序的现代市场体系，依法促进各类生产要素自由流动，保障各类市场主体公平参与市场竞争。  **第六条**　国家鼓励、支持、引导非公有制经济发展，激发非公有制经济活力和创造力。  国家进一步扩大对外开放，积极促进外商投资，平等对待内资企业、外商投资企业等各类市场主体。  **第七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优化营商环境工作的组织领导，完善优化营商环境的政策措施，建立健全统筹推进、督促落实优化营商环境工作的相关机制，及时协调、解决优化营商环境工作中的重大问题。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做好优化营商环境的相关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可以明确优化营商环境工作的主管部门。  国家鼓励和支持各地区、各部门结合实际情况，在法治框架内积极探索原创性、差异化的优化营商环境具体措施；对探索中出现失误或者偏差，符合规定条件的，可以予以免责或者减轻责任。  **第八条**　国家建立和完善以市场主体和社会公众满意度为导向的营商环境评价体系，发挥营商环境评价对优化营商环境的引领和督促作用。  开展营商环境评价，不得影响各地区、各部门正常工作，不得影响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或者增加市场主体负担。  任何单位不得利用营商环境评价谋取利益。  **第九条**　市场主体应当遵守法律法规，恪守社会公德和商业道德，诚实守信、公平竞争，履行安全、质量、劳动者权益保护、消费者权益保护等方面的法定义务，在国际经贸活动中遵循国际通行规则。  **第二章　市场主体保护**  **第十条**　国家坚持权利平等、机会平等、规则平等，保障各种所有制经济平等受到法律保护。  **第十一条**　市场主体依法享有经营自主权。对依法应当由市场主体自主决策的各类事项，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预。  **第十二条**　国家保障各类市场主体依法平等使用资金、技术、人力资源、土地使用权及其他自然资源等各类生产要素和公共服务资源。  各类市场主体依法平等适用国家支持发展的政策。政府及其有关部门在政府资金安排、土地供应、税费减免、资质许可、标准制定、项目申报、职称评定、人力资源政策等方面，应当依法平等对待各类市场主体，不得制定或者实施歧视性政策措施。  **第十三条**　招标投标和政府采购应当公开透明、公平公正，依法平等对待各类所有制和不同地区的市场主体，不得以不合理条件或者产品产地来源等进行限制或者排斥。  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招标投标和政府采购监管，依法纠正和查处违法违规行为。  **第十四条**　国家依法保护市场主体的财产权和其他合法权益，保护企业经营者人身和财产安全。  严禁违反法定权限、条件、程序对市场主体的财产和企业经营者个人财产实施查封、冻结和扣押等行政强制措施；依法确需实施前述行政强制措施的，应当限定在所必需的范围内。  禁止在法律、法规规定之外要求市场主体提供财力、物力或者人力的摊派行为。市场主体有权拒绝任何形式的摊派。  **第十五条**　国家建立知识产权侵权惩罚性赔偿制度，推动建立知识产权快速协同保护机制，健全知识产权纠纷多元化解决机制和知识产权维权援助机制，加大对知识产权的保护力度。  国家持续深化商标注册、专利申请便利化改革，提高商标注册、专利申请审查效率。  **第十六条**　国家加大中小投资者权益保护力度，完善中小投资者权益保护机制，保障中小投资者的知情权、参与权，提升中小投资者维护合法权益的便利度。  **第十七条**　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市场主体有权自主决定加入或者退出行业协会商会等社会组织，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预。  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任何单位和个人不得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参加评比、达标、表彰、培训、考核、考试以及类似活动，不得借前述活动向市场主体收费或者变相收费。  **第十八条**　国家推动建立全国统一的市场主体维权服务平台，为市场主体提供高效、便捷的维权服务。  **第三章　市场环境**  **第十九条**　国家持续深化商事制度改革，统一企业登记业务规范，统一数据标准和平台服务接口，采用统一社会信用代码进行登记管理。  国家推进“证照分离”改革，持续精简涉企经营许可事项，依法采取直接取消审批、审批改为备案、实行告知承诺、优化审批服务等方式，对所有涉企经营许可事项进行分类管理，为企业取得营业执照后开展相关经营活动提供便利。除法律、行政法规规定的特定领域外，涉企经营许可事项不得作为企业登记的前置条件。  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简化企业从申请设立到具备一般性经营条件所需办理的手续。在国家规定的企业开办时限内，各地区应当确定并公开具体办理时间。  企业申请办理住所等相关变更登记的，有关部门应当依法及时办理，不得限制。除法律、法规、规章另有规定外，企业迁移后其持有的有效许可证件不再重复办理。  **第二十条**　国家持续放宽市场准入，并实行全国统一的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市场准入负面清单以外的领域，各类市场主体均可以依法平等进入。  各地区、各部门不得另行制定市场准入性质的负面清单。  **第二十一条**　政府有关部门应当加大反垄断和反不正当竞争执法力度，有效预防和制止市场经济活动中的垄断行为、不正当竞争行为以及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的行为，营造公平竞争的市场环境。  **第二十二条**　国家建立健全统一开放、竞争有序的人力资源市场体系，打破城乡、地区、行业分割和身份、性别等歧视，促进人力资源有序社会性流动和合理配置。  **第二十三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完善政策措施、强化创新服务，鼓励和支持市场主体拓展创新空间，持续推进产品、技术、商业模式、管理等创新，充分发挥市场主体在推动科技成果转化中的作用。  **第二十四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严格落实国家各项减税降费政策，及时研究解决政策落实中的具体问题，确保减税降费政策全面、及时惠及市场主体。  **第二十五条**　设立政府性基金、涉企行政事业性收费、涉企保证金，应当有法律、行政法规依据或者经国务院批准。对政府性基金、涉企行政事业性收费、涉企保证金以及实行政府定价的经营服务性收费，实行目录清单管理并向社会公开，目录清单之外的前述收费和保证金一律不得执行。推广以金融机构保函替代现金缴纳涉企保证金。  **第二十六条**　国家鼓励和支持金融机构加大对民营企业、中小企业的支持力度，降低民营企业、中小企业综合融资成本。  金融监督管理部门应当完善对商业银行等金融机构的监管考核和激励机制，鼓励、引导其增加对民营企业、中小企业的信贷投放，并合理增加中长期贷款和信用贷款支持，提高贷款审批效率。  商业银行等金融机构在授信中不得设置不合理条件，不得对民营企业、中小企业设置歧视性要求。商业银行等金融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规范收费行为，不得违规向服务对象收取不合理费用。商业银行应当向社会公开开设企业账户的服务标准、资费标准和办理时限。  **第二十七条**　国家促进多层次资本市场规范健康发展，拓宽市场主体融资渠道，支持符合条件的民营企业、中小企业依法发行股票、债券以及其他融资工具，扩大直接融资规模。  **第二十八条**　供水、供电、供气、供热等公用企事业单位应当向社会公开服务标准、资费标准等信息，为市场主体提供安全、便捷、稳定和价格合理的服务，不得强迫市场主体接受不合理的服务条件，不得以任何名义收取不合理费用。各地区应当优化报装流程，在国家规定的报装办理时限内确定并公开具体办理时间。  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对公用企事业单位运营的监督管理。  **第二十九条**　行业协会商会应当依照法律、法规和章程，加强行业自律，及时反映行业诉求，为市场主体提供信息咨询、宣传培训、市场拓展、权益保护、纠纷处理等方面的服务。  国家依法严格规范行业协会商会的收费、评比、认证等行为。  **第三十条**　国家加强社会信用体系建设，持续推进政务诚信、商务诚信、社会诚信和司法公信建设，提高全社会诚信意识和信用水平，维护信用信息安全，严格保护商业秘密和个人隐私。  **第三十一条**　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履行向市场主体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不得以行政区划调整、政府换届、机构或者职能调整以及相关责任人更替等为由违约毁约。因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需要改变政策承诺、合同约定的，应当依照法定权限和程序进行，并依法对市场主体因此受到的损失予以补偿。  **第三十二条**　国家机关、事业单位不得违约拖欠市场主体的货物、工程、服务等账款，大型企业不得利用优势地位拖欠中小企业账款。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加大对国家机关、事业单位拖欠市场主体账款的清理力度，并通过加强预算管理、严格责任追究等措施，建立防范和治理国家机关、事业单位拖欠市场主体账款的长效机制。  **第三十三条**　政府有关部门应当优化市场主体注销办理流程，精简申请材料、压缩办理时间、降低注销成本。对设立后未开展生产经营活动或者无债权债务的市场主体，可以按照简易程序办理注销。对有债权债务的市场主体，在债权债务依法解决后及时办理注销。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建立企业破产工作协调机制，协调解决企业破产过程中涉及的有关问题。  **第四章　政务服务**  **第三十四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进一步增强服务意识，切实转变工作作风，为市场主体提供规范、便利、高效的政务服务。  **第三十五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推进政务服务标准化，按照减环节、减材料、减时限的要求，编制并向社会公开政务服务事项（包括行政权力事项和公共服务事项，下同）标准化工作流程和办事指南，细化量化政务服务标准，压缩自由裁量权，推进同一事项实行无差别受理、同标准办理。没有法律、法规、规章依据，不得增设政务服务事项的办理条件和环节。  **第三十六条**　政府及其有关部门办理政务服务事项，应当根据实际情况，推行当场办结、一次办结、限时办结等制度，实现集中办理、就近办理、网上办理、异地可办。需要市场主体补正有关材料、手续的，应当一次性告知需要补正的内容；需要进行现场踏勘、现场核查、技术审查、听证论证的，应当及时安排、限时办结。  法律、法规、规章以及国家有关规定对政务服务事项办理时限有规定的，应当在规定的时限内尽快办结；没有规定的，应当按照合理、高效的原则确定办理时限并按时办结。各地区可以在国家规定的政务服务事项办理时限内进一步压减时间，并应当向社会公开；超过办理时间的，办理单位应当公开说明理由。  地方各级人民政府已设立政务服务大厅的，本行政区域内各类政务服务事项一般应当进驻政务服务大厅统一办理。对政务服务大厅中部门分设的服务窗口，应当创造条件整合为综合窗口，提供一站式服务。  **第三十七条**　国家加快建设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以下称一体化在线平台），推动政务服务事项在全国范围内实现“一网通办”。除法律、法规另有规定或者涉及国家秘密等情形外，政务服务事项应当按照国务院确定的步骤，纳入一体化在线平台办理。  国家依托一体化在线平台，推动政务信息系统整合，优化政务流程，促进政务服务跨地区、跨部门、跨层级数据共享和业务协同。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提供数据共享服务，及时将有关政务服务数据上传至一体化在线平台，加强共享数据使用全过程管理，确保共享数据安全。  国家建立电子证照共享服务系统，实现电子证照跨地区、跨部门共享和全国范围内互信互认。各地区、各部门应当加强电子证照的推广应用。  各地区、各部门应当推动政务服务大厅与政务服务平台全面对接融合。市场主体有权自主选择政务服务办理渠道，行政机关不得限定办理渠道。  **第三十八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通过政府网站、一体化在线平台，集中公布涉及市场主体的法律、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和各类政策措施，并通过多种途径和方式加强宣传解读。  **第三十九条**　国家严格控制新设行政许可。新设行政许可应当按照行政许可法和国务院的规定严格设定标准，并进行合法性、必要性和合理性审查论证。对通过事中事后监管或者市场机制能够解决以及行政许可法和国务院规定不得设立行政许可的事项，一律不得设立行政许可，严禁以备案、登记、注册、目录、规划、年检、年报、监制、认定、认证、审定以及其他任何形式变相设定或者实施行政许可。  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决定对相关管理事项已作出规定，但未采取行政许可管理方式的，地方不得就该事项设定行政许可。对相关管理事项尚未制定法律、行政法规的，地方可以依法就该事项设定行政许可。  **第四十条**　国家实行行政许可清单管理制度，适时调整行政许可清单并向社会公布，清单之外不得违法实施行政许可。  国家大力精简已有行政许可。对已取消的行政许可，行政机关不得继续实施或者变相实施，不得转由行业协会商会或者其他组织实施。  对实行行政许可管理的事项，行政机关应当通过整合实施、下放审批层级等多种方式，优化审批服务，提高审批效率，减轻市场主体负担。符合相关条件和要求的，可以按照有关规定采取告知承诺的方式办理。  **第四十一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深化投资审批制度改革，根据项目性质、投资规模等分类规范投资审批程序，精简审批要件，简化技术审查事项，强化项目决策与用地、规划等建设条件落实的协同，实行与相关审批在线并联办理。  **第四十二条**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优化工程建设项目（不包括特殊工程和交通、水利、能源等领域的重大工程）审批流程，推行并联审批、多图联审、联合竣工验收等方式，简化审批手续，提高审批效能。  在依法设立的开发区、新区和其他有条件的区域，按照国家有关规定推行区域评估，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对一定区域内压覆重要矿产资源、地质灾害危险性等事项进行统一评估，不再对区域内的市场主体单独提出评估要求。区域评估的费用不得由市场主体承担。  **第四十三条**　作为办理行政审批条件的中介服务事项（以下称法定行政审批中介服务）应当有法律、法规或者国务院决定依据；没有依据的，不得作为办理行政审批的条件。中介服务机构应当明确办理法定行政审批中介服务的条件、流程、时限、收费标准，并向社会公开。  国家加快推进中介服务机构与行政机关脱钩。行政机关不得为市场主体指定或者变相指定中介服务机构；除法定行政审批中介服务外，不得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接受中介服务。行政机关所属事业单位、主管的社会组织及其举办的企业不得开展与本机关所负责行政审批相关的中介服务，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行政机关在行政审批过程中需要委托中介服务机构开展技术性服务的，应当通过竞争性方式选择中介服务机构，并自行承担服务费用，不得转嫁给市场主体承担。  **第四十四条**　证明事项应当有法律、法规或者国务院决定依据。  设定证明事项，应当坚持确有必要、从严控制的原则。对通过法定证照、法定文书、书面告知承诺、政府部门内部核查和部门间核查、网络核验、合同凭证等能够办理，能够被其他材料涵盖或者替代，以及开具单位无法调查核实的，不得设定证明事项。  政府有关部门应当公布证明事项清单，逐项列明设定依据、索要单位、开具单位、办理指南等。清单之外，政府部门、公用企事业单位和服务机构不得索要证明。各地区、各部门之间应当加强证明的互认共享，避免重复索要证明。  **第四十五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促进跨境贸易便利化的有关要求，依法削减进出口环节审批事项，取消不必要的监管要求，优化简化通关流程，提高通关效率，清理规范口岸收费，降低通关成本，推动口岸和国际贸易领域相关业务统一通过国际贸易“单一窗口”办理。  **第四十六条**　税务机关应当精简办税资料和流程，简并申报缴税次数，公开涉税事项办理时限，压减办税时间，加大推广使用电子发票的力度，逐步实现全程网上办税，持续优化纳税服务。  **第四十七条**　不动产登记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加强部门协作，实行不动产登记、交易和缴税一窗受理、并行办理，压缩办理时间，降低办理成本。在国家规定的不动产登记时限内，各地区应当确定并公开具体办理时间。  国家推动建立统一的动产和权利担保登记公示系统，逐步实现市场主体在一个平台上办理动产和权利担保登记。纳入统一登记公示系统的动产和权利范围另行规定。  **第四十八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构建亲清新型政商关系的要求，建立畅通有效的政企沟通机制，采取多种方式及时听取市场主体的反映和诉求，了解市场主体生产经营中遇到的困难和问题，并依法帮助其解决。  建立政企沟通机制，应当充分尊重市场主体意愿，增强针对性和有效性，不得干扰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不得增加市场主体负担。  **第四十九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建立便利、畅通的渠道，受理有关营商环境的投诉和举报。  **第五十条**　新闻媒体应当及时、准确宣传优化营商环境的措施和成效，为优化营商环境创造良好舆论氛围。  国家鼓励对营商环境进行舆论监督，但禁止捏造虚假信息或者歪曲事实进行不实报道。  **第五章　监管执法**  **第五十一条**　政府有关部门应当严格按照法律法规和职责，落实监管责任，明确监管对象和范围、厘清监管事权，依法对市场主体进行监管，实现监管全覆盖。  **第五十二条**　国家健全公开透明的监管规则和标准体系。国务院有关部门应当分领域制定全国统一、简明易行的监管规则和标准，并向社会公开。  **第五十三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关于加快构建以信用为基础的新型监管机制的要求，创新和完善信用监管，强化信用监管的支撑保障，加强信用监管的组织实施，不断提升信用监管效能。  **第五十四条**　国家推行“双随机、一公开”监管，除直接涉及公共安全和人民群众生命健康等特殊行业、重点领域外，市场监管领域的行政检查应当通过随机抽取检查对象、随机选派执法检查人员、抽查事项及查处结果及时向社会公开的方式进行。针对同一检查对象的多个检查事项，应当尽可能合并或者纳入跨部门联合抽查范围。  对直接涉及公共安全和人民群众生命健康等特殊行业、重点领域，依法依规实行全覆盖的重点监管，并严格规范重点监管的程序；对通过投诉举报、转办交办、数据监测等发现的问题，应当有针对性地进行检查并依法依规处理。  **第五十五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鼓励创新的原则，对新技术、新产业、新业态、新模式等实行包容审慎监管，针对其性质、特点分类制定和实行相应的监管规则和标准，留足发展空间，同时确保质量和安全，不得简单化予以禁止或者不予监管。  **第五十六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充分运用互联网、大数据等技术手段，依托国家统一建立的在线监管系统，加强监管信息归集共享和关联整合，推行以远程监管、移动监管、预警防控为特征的非现场监管，提升监管的精准化、智能化水平。  **第五十七条**　国家建立健全跨部门、跨区域行政执法联动响应和协作机制，实现违法线索互联、监管标准互通、处理结果互认。  国家统筹配置行政执法职能和执法资源，在相关领域推行综合行政执法，整合精简执法队伍，减少执法主体和执法层级，提高基层执法能力。  **第五十八条**　行政执法机关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全面落实行政执法公示、行政执法全过程记录和重大行政执法决定法制审核制度，实现行政执法信息及时准确公示、行政执法全过程留痕和可回溯管理、重大行政执法决定法制审核全覆盖。  **第五十九条**　行政执法中应当推广运用说服教育、劝导示范、行政指导等非强制性手段，依法慎重实施行政强制。采用非强制性手段能够达到行政管理目的的，不得实施行政强制；违法行为情节轻微或者社会危害较小的，可以不实施行政强制；确需实施行政强制的，应当尽可能减少对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的影响。  开展清理整顿、专项整治等活动，应当严格依法进行，除涉及人民群众生命安全、发生重特大事故或者举办国家重大活动，并报经有权机关批准外，不得在相关区域采取要求相关行业、领域的市场主体普遍停产、停业的措施。  禁止将罚没收入与行政执法机关利益挂钩。  **第六十条**　国家健全行政执法自由裁量基准制度，合理确定裁量范围、种类和幅度，规范行政执法自由裁量权的行使。  **第六章　法治保障**  **第六十一条**　国家根据优化营商环境需要，依照法定权限和程序及时制定或者修改、废止有关法律、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  优化营商环境的改革措施涉及调整实施现行法律、行政法规等有关规定的，依照法定程序经有权机关授权后，可以先行先试。  **第六十二条**　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充分听取市场主体、行业协会商会的意见。  除依法需要保密外，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应当通过报纸、网络等向社会公开征求意见，并建立健全意见采纳情况反馈机制。向社会公开征求意见的期限一般不少于30日。  **第六十三条**　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进行公平竞争审查。  制定涉及市场主体权利义务的行政规范性文件，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进行合法性审核。  市场主体认为地方性法规同行政法规相抵触，或者认为规章同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可以向国务院书面提出审查建议，由有关机关按照规定程序处理。  **第六十四条**　没有法律、法规或者国务院决定和命令依据的，行政规范性文件不得减损市场主体合法权益或者增加其义务，不得设置市场准入和退出条件，不得干预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  涉及市场主体权利义务的行政规范性文件应当按照法定要求和程序予以公布，未经公布的不得作为行政管理依据。  **第六十五条**　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应当结合实际，确定是否为市场主体留出必要的适应调整期。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统筹协调、合理把握规章、行政规范性文件等的出台节奏，全面评估政策效果，避免因政策叠加或者相互不协调对市场主体正常生产经营活动造成不利影响。  **第六十六条**　国家完善调解、仲裁、行政裁决、行政复议、诉讼等有机衔接、相互协调的多元化纠纷解决机制，为市场主体提供高效、便捷的纠纷解决途径。  **第六十七条**　国家加强法治宣传教育，落实国家机关普法责任制，提高国家工作人员依法履职能力，引导市场主体合法经营、依法维护自身合法权益，不断增强全社会的法治意识，为营造法治化营商环境提供基础性支撑。  **第六十八条**　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整合律师、公证、司法鉴定、调解、仲裁等公共法律服务资源，加快推进公共法律服务体系建设，全面提升公共法律服务能力和水平，为优化营商环境提供全方位法律服务。  **第六十九条**　政府和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依规追究责任：  （一）违法干预应当由市场主体自主决策的事项；  （二）制定或者实施政策措施不依法平等对待各类市场主体；  （三）违反法定权限、条件、程序对市场主体的财产和企业经营者个人财产实施查封、冻结和扣押等行政强制措施；  （四）在法律、法规规定之外要求市场主体提供财力、物力或者人力；  （五）没有法律、法规依据，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参加评比、达标、表彰、培训、考核、考试以及类似活动，或者借前述活动向市场主体收费或者变相收费；  （六）违法设立或者在目录清单之外执行政府性基金、涉企行政事业性收费、涉企保证金；  （七）不履行向市场主体依法作出的政策承诺以及依法订立的各类合同，或者违约拖欠市场主体的货物、工程、服务等账款；  （八）变相设定或者实施行政许可，继续实施或者变相实施已取消的行政许可，或者转由行业协会商会或者其他组织实施已取消的行政许可；  （九）为市场主体指定或者变相指定中介服务机构，或者违法强制市场主体接受中介服务；  （十）制定与市场主体生产经营活动密切相关的行政法规、规章、行政规范性文件时，不按照规定听取市场主体、行业协会商会的意见；  （十一）其他不履行优化营商环境职责或者损害营商环境的情形。  **第七十条**　公用企事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部门责令改正，依法追究法律责任：  （一）不向社会公开服务标准、资费标准、办理时限等信息；  （二）强迫市场主体接受不合理的服务条件；  （三）向市场主体收取不合理费用。  **第七十一条**　行业协会商会、中介服务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部门责令改正，依法追究法律责任：  （一）违法开展收费、评比、认证等行为；  （二）违法干预市场主体加入或者退出行业协会商会等社会组织；  （三）没有法律、法规依据，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参加评比、达标、表彰、培训、考核、考试以及类似活动，或者借前述活动向市场主体收费或者变相收费；  （四）不向社会公开办理法定行政审批中介服务的条件、流程、时限、收费标准；  （五）违法强制或者变相强制市场主体接受中介服务。  **第七章　附　　则**  **第七十二条**　本条例自2020年1月1日起施行。 |